발송번호: 9-5-2024-092575998
발송일자: 2024.10.31.
제출기일: 2024.12.31.

특 허 청

의견제출통지서

출 원 인	성 명	
	주 소	
대 리 인	성 명	
	주 소	

출 원 번 호	40-2023-0103561
상 품 류	제 25 류

1. 이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아래와 같은 거절이유가 있어 이를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거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 제출기일까지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(관계법령 : 상표법 제54조 및 제55조, 의견서 :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,
보정서 :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)

2. 위 제출기일에 대하여 매회 1월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기간연장승인통지는 하지 않습니다. 기간연장은 2회 이상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, 기간연장신청서는 지정(연장)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.

거 절 이 유

이 상표등록출원 상표는 다음 거절이유가 있어 통지합니다.

1.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2. 상표법 제35조 제1항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아래 거절이유의 상세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거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 상기 제출기일까지 의견(답변, 소명)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: 상표견본이미지

본 출원	인용	인용	인용
제4020230103561호	제4020220212702호	제4008496720000호	제4102079420000호
KUKDAESTAR!	국대들	국대	국대

(※ 본 통지서의 상표견본 이미지는 출원서에 첨부된 상표견본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)

[거절이유1]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

이 출원상표는 아래와 같이 타인의 선등록 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(또는 유사)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○선등록상표 제 4008496720000호 (국대)와 동일유사
- 거절 대상이 되는 상품 : 전부

○선등록상표 제 4102079420000호 (국대)와 동일유사
- 거절 대상이 되는 상품 : 전부

[거절이유2] 상표법 제35조 제1항(또는 동법 제34조 제1항 제7호)

이 출원상표는 아래와 같이 타인의 선출원 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(또는 동일)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선출원 상표가 최종 설정등록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○타인의 선출원 제 4020220212702호 (국대들)와 (1요부의 호칭) 동일유사
- 거절 대상이 되는 상품 : 전부. 끝.

2024.10.31.

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

심사관 조윤진

1. 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타인의 선출원·선등록 상표의 지정상품에 대한 동일·유사 여부는 유사상품 심사기준(특허청 예규)을 참고하여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.

2. 타인의 선출원·선등록 상표의 상세한 내용은 「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(http://www.kipris.or.kr/)」에서 무료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
※ 위에서 안내한 후속 절차 또는 신청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특허고객상담센터 ☎1544-8080로, 이 통지서 내용에 대한 사항은 특허청 생활용품상표심사과 ☎042-481-8256(대표번호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의견서 제출 시 유의사항 안내 :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서(이미지로 작성된 부분 포함)를 제출하는 경우 개인정보(개인정보보호법 제2조)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(제3자의 서류철 열람/복사 신청 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공개될 수 있습니다)

※ 특허로(www.patent.go.kr) 또는 특허청(www.kipo.go.kr)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심사 진행상황, 서류 제출 및 절차에 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(특허청)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, 4동 (둔산동, 정부대전청사)